

南北經濟協力과 食品產業 進出方向

— 식품산업 진출방향을 중심으로 —

李 榮 善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1. 남북 경제협력의 현황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교역, 투자, 그리고 다자간 국제협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북한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가공 무역은 교역과 투자의 양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선봉—나진 자유경제무역지구 등의 설치에 따른 투자문제는 투자와 다자적 국제협력의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대북한 교역은 1989년에 시작되었다. 교역시작 첫 해에 한국은 북한으로 6만9천 달러에 해당하는 물량을 반출한데 반하여 2,223만달러 어치를 반입하였다. 이와 같은 교역상의 불균형은 그후 계속되어 왔는데 그 불균형의 크기는 남북간의 교역의 확대에 따라 더욱 확대되어 왔다. 1991년까지 남북교역은 급격히 증가하여 91년에는 반출 2,617만달러, 반입 1억 6,600만달러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91년 이후 그 증가 속도는 감소하여 1992년 한국의 대북한 교역은 반출 1,282만 달러, 반입 2억 68만달러에 머물게 되었으나 이미 한국이 북한의 중요 교역대상지역이 되었다. 92년 북한의 총 대외교역량의 8%가對남한 교역량이 된 것이다. 93년에는 남북교역의 총액이 92년

에 비해 7% 정도 감소하였다. 이는 핵문제로 야기된 남북관계의 경색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북한간의 교역이 확대되면서도 반출입간의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는 것은 우선 북한의 외환보유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북한이 남한과의 교역을 통해 교환을 통한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외환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반입해 가는 품목도 주로 재가공하여 수출하기 위한 원부자재라는 점에서 입증된다.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반입해 가는 품목들을 보면 자본재로서 양말편직기, 진공포장기 등이 있고 재가공을 위한 원부자재로서 플라스틱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 폴리에스터 직물 등이 있고, 소비재로서 쌀, TV, 의류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대북한 반출품의 구성을 보면 북한과의 교역이 자유화되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남북한 분업체제가 이루어져 남한이 북한으로 상당량의 자본재와 원부자재를 반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소비재 공업의 낙후는 남한으로부터의 소비재의 반출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반입해오는 품목으로는 감자, 한약재, 명태 등의 농수산품이 거

나 아연괴, 금괴, 선철, 무연탄 등의 광산품, 그리고 위탁가공에 의한 의류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반입품목은 남북한 간의 분업체제는 물론 물자의 교류방향을 암시해 주고 있다.

앞에서 우리는 남북한간의 무역거래가 위탁가공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남북한간의 위탁가공은 1991년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그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간의 위탁가공은 1994년 2월까지 총 67건에 완제품반입 및 수출 767만달러를 기록하였다. 93년 5월까지의 자료로 계산한 결과 임가공을 통해 북한이 얻은 총 부가가치는 총 완제품 반입 및 수출액의 27%에 달한다.

북한의 노동의 질과 생산기술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남북한간의 위탁가공은 경공업제품분야에서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장애요인도 있다. 즉 제품의 시장 변화에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나 남북한간의 관계가 여의치 않아 남기의 지연, 원부자재의 적기 공급상의 어려움, 운송상의 장애 등이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 위탁가공무역을 수행하여 적지 않은 외화수입을 올려 왔다. 일본은 특히 신사복을 비롯한 의류부문에서만 1992년 한해에 6,500만달러 어치를 북한으로부터 가공 수입하였다. 북한 노동자의 봉제기술이 양호하고 생산비도 저렴하며, 또 조총련계의 기술지도로 일본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앞으로도 북한이 일본의 중요한 의류공급기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1984년) 이후 지금까지 약 120여 건의 대북한 합영투자를 시행해 왔다. 일본 이외에도 독일이 북한으로부터 92년 한 해 만도 6,800만달러의 의류를 수입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위탁가공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투자는 앞서 언급된 위탁 가공무역의 형태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직접적인 투자는 일어나고 있

지 않다. 수차례에 걸친 남한 기업인의 북한 방문이 남한 기업의 대북한 투자의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으나 핵문제에 의해 제동이 걸려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단계에서 아직 직교역과 자본투자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위한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앞서 거론된 정치-군사적 문제가 정리되고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법제도가 확고해지면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는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통일원이 1993년 2월에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남북교역에 참여했거나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 북한주민을 접촉했던 81개 기업 중 73%인 59개 기업이 북한에 대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 이들 기업이 북한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새로운 시장개척의 관점에서이다. 또 투자대상분야로서도 섬유, 봉제, 완구, 신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농수산 및 지하자원, 관광, 운송분야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과 자원이라는 생산요소상의 보완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이 투자 회망지역으로 남포, 평양, 나진-선봉지역, 판문점부근 등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어 북한의 자유무역지대의 격리전략을 수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중국이 제창한 두만강유역 개발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개발을 제안하고 이 지역의 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에 천진항의 사용권을 조차해 주는 등, 두만강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에 있어 북한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중국의 중심부에 가까운 신의주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구로 설정할 것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해외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투자환경, 이를테면 사회간접자본, 법과 제도 등이 완비되어 있지 않

1) 통일원(1993) 및 1993년 2월11일자 경향신문을 참조함

으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불확실성을 크게 하여 실질적인 해외투자의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정책과 과제

우리는 앞에서 남북경제협력의 여전으로서의 북한경제의 현실과 개혁 가능성, 그리고 지금의 경제협력의 현황을 보았다. 이를 요약한다면 북한의 경제적 현실은 급진적이지는 않으나 점진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북한은 점차적인 대외관계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안으로 남아있는 정치 군사적 긴장이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인가?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장기적으로는 민족의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경제적 동질화라는 목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 또한 경제 협력을 통해 소득의 중대를 꾀함으로써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축소할 뿐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는 산업구조를 활용하여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은 물론 분업의 심화를 통한 교역의 이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국민생산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남한은 서비스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광공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수산부문에서도 북한은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 제조업의 구조에서도 남북한의 차이는 현저하다. 북한의 경우 경공업의 구성비가 크게 낮아 소비재 공업이 낙후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남북한 간의 보완관계는 산업구조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흔히 언급되는 바와 같이 북한에는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이 존재한다. 북한의 임금도 직종과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약 40달러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인 합영기업의 노동자 월 평균임금은 150달러로 알려지고 있다.³⁾ 북한의 노동력의 교육수준이 높고 또 근로윤리가 잘 정립되어 있다는 점과 언어적 장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보다 노동면에서 좋은 투자유인이 있다고 보겠다. 이에 비해 남한은 고임금 수준에 의해 노동집약적 산업에의 비교우위를 잃고 있으며 이 분야의 기술과 자본의 해외투자를 모색하고 있는 바 북한은 이 점에서 좋은 투자대상자지역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중요한 경제적 유인이다.

이러한 상호보완성과 경제적 유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여러가지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거래상의 불편과 불확실성,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상호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는 비경제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는 북한의 시장이 협소하여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반출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는 점과 남한의 대북 투자도 북한의 내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수출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점, 북한의 외환부족과 결제제도의 미비로 대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또는 투자의 경우 과실송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극복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북한의 하부구조의 미비는 교역과 투자를 모두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남북교류확대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또 남북교류의 억제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각 측면에서의 기술적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최근 남한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하여 중단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2) Il-Dong Koh(1993), pp. 140~153

3) 전홍택(1993), p.105를 참조함

먼저 핵문제의 등장과 함께 취해진 남한 정부의 경제협력과 관련된 전략에 관한 문제이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제기와 더불어 남한 기업인의 북한 방문금지는 물론 북한과의 직교류의 확대를 억제하고 있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북한을 오히려 유리하게 해 준다는 논리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일군의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⁴⁾ 이 주장에 따르면 남북의 경제협력은 북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남한에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북한은 남한만을 경제협력의 대상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남한이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단절할 경우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동질화 과정 혹은 남북의 산업구조 조정이 저해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치 군사적 관계와 무관하게 경제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제 북한 핵문제에 어떤 돌파구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국제적 공조체제에 의한 경제제재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설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이 일면 핵문제로 국제적 긴장을 일으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려는 전략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적 현실이 대외관계의 증진과 점진적인 개혁의 추구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면 북한은 긴장의 해소에 대한 대가로 예컨대 미국으로부터의 원조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때 주어지는 미국의 대북한 원조는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에의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대북한 거래금지보다는 보다 신축적인 정책을 구사하여 북한과의 협력관계의 길을 열어 놓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사실 경제는 정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러기에 남북경협문제를 경제적 논리로만 풀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협력을 남북의 긴장 완화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장기적인 경제통합과정에 기여할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군사력 혹은 핵을 남한과의 경쟁관계에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남한은 경제력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남한의 경제력과 자유시장질서의 물결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앙에서 분리되어 있으며 인구가 적은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원하고 또 남한의 기업이 자발적 동기에 의해 경제적 교류 혹은 협력관계를 맺으려 할 때 정부가 이를 금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과 남한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됨은 물론이고 그러한 관계가 발전될 때 북한의 급진적이고 불합리한 행동도 자제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모든 남한 기업의 대북한 접촉을 정부의 통제하에서 시행되도록 규제하였다. 북한은 정부에 의해 경제가 운영되므로 남한에서도 대등하게 정부가 대북 경제교류의 상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기업 스스로의 판단으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하며 또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공식적인 판단을 피하는 것이 좋을 때에도 일반적 규정에 묶이게 됨으로써 전략 면에서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북한과의 관계를 맺게 하며 정부는 정부 차원의 대북한 경제협력에만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의 협력과 교류에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 투자와 교역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에 같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관계를 갖는 남한기업에게 정부가 크게 지원을 하거나 위험부담을 보호해 주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 스스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규칙에 의거하여 남북교류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남한 정부의 인위적인 보호와

4) 이상만, 한계례신문, 1994년 3월

지원이 과도한 남한 기업의 대북한 경제활동을 유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자발적 판단에 의한 교류의 확대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의 교류는 국제교류가 아니라 내국거래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거래절차에서 내국간의 거래에 맞는 규칙과 절차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자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제한품목규정을 북한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처사는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교역에 있어서는 합리적 교류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교역이 위축되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되어 남한으로 반입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원산지 증명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나 아직 대외거래에 익숙하지 않는 북한으로부터 적절한 증명을 받아내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관세를 예치케 하여 통관하게 하고 후에 증명을 제출하면 환급해주는 신속적 통관방식을 사용하여 공연한 물자의 손상이나 부족한 창고 시설의 점거를 피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교류에 있어서 오히려 교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위탁가공이다. 앞서 남북의 교류현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과의 위탁가공은 남한 뿐 아니라 일본 독일 등과도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현재의 경제적 여전이 위탁가공에 의한 교류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즉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이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과 결합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위탁가공에 의한 교역은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섬유를 비롯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남한의 경우 언어와 문화

적 장벽이 없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수송비의 절감을 꾀할 수 있는 북한으로 자본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면 남북한 모두에 이득이 될 뿐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적 동질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통일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길이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위탁가공을 위한 남북한 교류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억제한다는 것은 결코 남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교역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간섭은 하지 않는 대신 기업단위의 대북 접촉을 묵인 함으로써 민간 수준에서의 판단에 따라 위탁가공무역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정부의 태도는 획기적인 위탁가공무역의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94년 초 정부가 기업인의 대북한 접촉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탁가공무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보호조치 없이도 남북한 간의 교류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민간기업의 대북한 경제관계에 대한 정부의 중립적 입장은 북한의 개방화의 확대와 개혁의 진전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또 북한이 시장경제제도의 도입 등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할 때 남한정부는 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남북경제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남북한 공통의 공공재에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남북한 사이에 공공재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으로 공공재에 투자하여 표준화가 무시될 경우 남북경제통합 후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임을 깨우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남북한 공히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남북한 연결교통체계의 완비, 혹은 금강산, 백두산 관광개발 사업 등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긴장이 해소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제삼국과의 협작에 의한 다자적 협력체의 구성을 통해 이러한 사

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UNDP가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은 국제적 협력에 의한 경제개발 시도로서 북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나진 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남한을 포함한 모든 외국의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도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마련할 뿐 아니라 항만 철도 등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해외에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사업은 약 20년에 걸쳐 약 3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시 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며 또 인접한 국가들이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렇게 협사리 전개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독자적인 개발을 주장해 오던 북한이 작년 평양회의에서 다소 양보함으로써 두만강개발회사의 정관작성작업이 추진되어 다자간의 공동개발의 가능성이 증대되었으며 중국이 청진항의 사용권을 얻게 됨으로써 국제적 협력에 의한 두만강 개발사업은 점차 진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두만강개발계획은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에 다자적 협력의 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남북한의 긴장관계와 관계없이 국제적 관계 속에서 남북한 간의 협력이 논의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남한정부는 부산과 청진을 잇는 직항로의 개설을 허가했는데 이는 한국의 물자를 북한을 통해 중국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노력에 의해 발단된 것이다. 즉 중국과 남북한의 다자적 관계속에서 남북간의 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실례를 보여 준 셈이다.

두만강유역 개발의 중요한 의미는 이 지역이 동북아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 철도와 항만을 적절히 구비함으로써 중국의 동북부와 러시아 원동

지역의 자원을 남한에 수송하며 또 철도를 통해 남한을 유럽과 연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체계가 가져오는 무역의 흐름의 확대가 이 지역의 개발목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남한으로서는 이 지역의 개발에 국제적 협력체계를 통해 적극 참여해야 함은 물론 나진 선봉지역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계획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지역의 다자간의 협력체계에 참여하는 길은 두만강개발회사에 주주로서 참여하는 길인 바 최근의 논의는 두만강과 접하지 않은 비접경국가에는 불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한 외교적 활동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경제개발을 시도할 경우 남한의 경제개발경험과 지식을 전달하고 경영관리능력을 전수하며 북한의 경영관리인력을 훈련하는 일도 중요한 경제협력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 단일경제체제의 구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는 남북한간의 인적 교류의 확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남북한 간의 협력의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을 논의하였다. 물론 이 논의는 결코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남북한간의 교류가 확대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 혹은 금융제도등이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문제들은 기술적 문제이므로 남북한 사이의 협력의 방향이 확정되면 부수적으로 따라 올 문제들이므로 여기서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반복하건대 지금의 남북경제협력의 과제는 지금과 같은 남북한간의 정치 군사적 긴장관계에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민족의 통일에 유익한 협력관계를 창출해 낼 수 있는가의 문제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여기에 대한 답은 결코 일방적인 전략일 수 없으며 점진적이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의 구분을 통한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유효하다고 하겠다.

표 1.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의 비교

	북 한 (A)				남 한 (B)				대비 (B/A)
	90	91	92	93	90	91	92	93	
명목국민총생산(10억 \$)	23.7	22.9	21.1	20.5	255.8	281.7	294.5	328.7	16.0
일인당국민총생산(1\$)		1,038	943	904		6,518	6,749	7,466	8.3
성장률(%)	-3.7	-5.2	-7.6	-4.3	9.2	8.4	5.0	5.6	
인구(천명)		22,028	22,336	22,645		43,268	43,663	44,056	1.9
교역액(10억 \$)		2.72	2.66	2.64		153.4	158.4	166.0	62.9
수출(10억 \$)		1.01	1.02	1.02		71.87	76.63	82.24	80.6
수입(10억 \$)		1.71	1.64	1.62		81.52	81.78	83.8	51.7
외채(10억 \$)		9.28	9.72	10.32		39.13	42.82	44.08	4.3
외채/GNP(%)		40.5	46.0	50.3		13.9	14.5	13.4	

출처 : 한국은행(1993)

표 2.

식량생산 및 부족량

(단위 : 백만톤)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추수량(전년도)	5.47	4.81	4.41	4.26
수입	0.89	1.30	0.82	0.25
수요			6.50	6.85
부족량			1.25	2.34

출처 : EIU, 1993, IV.

표 3.

남북한 교역실적(승인기준)

년도	반입		반출		계
	품목수	금액(천\$)	품목수	금액(천\$)	
'88	4	1,037	—	—	1,037
'89	19	22,235	1	69	22,304
'90	26	20,354	4	4,731	25,085
'91	69	165,996	48	26,176	192,172
'92	93	200,685	34	12,818	213,503
'93	87	188,528	39	10,262	198,790

출처 : 국토통일원

표 4.

연도별 남북위탁가공교역 실적(반입기준)

년도	건수	금액(천달러)	비고
'91	1	23	학생용 가방
'92	9	529	가방, 배낭, 의류, 신발갑피
'93	42	4,338	의류, 봉제가구, 신발갑피
'94.1~9	27	12,411	의류(남자자켓류, 작업복, 반바지)

출처 : 국토통일원

표 5.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령 정비현황

시 기	제 정 (개정) 법 령 내 용
1984. 9	합영법(개정, 1994.1)
1985. 3	합영회사 소득세법(사실상 폐지), 합영회사 소득세법세칙(사실상 폐지) 외국인 소득세법(사실상 폐지), 외국인 소득세법 세칙(사실상 폐지) 합영법 시행세칙(개정, 1992.10)
1992. 10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1993. 1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환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 10	토지임대법
1993. 11	세관법, 외국인투자은행법,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규정
1993. 12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
1994. 2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 규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1994. 3	외국인기업법 시행규정
1994. 4	자유무역항 규정

표 6. 북한과 아시아 경쟁국의 노동력·임금 비교

	노 동 력	월평균임금(달러)	고 용	기 타
북 한	* 교육수준 높음 * 노동력 풍부	* 미숙련공: 150 * 숙련공, 관리자: 150~400	* 노동행정 기관과 계약	* 사회보험료 7% 회사부담 * 연간 15일 휴가
중 국	* 교육수준 보통 * 단순인력 풍부 * 숙련인력 부족	90~112.5	* 노동기관 직접 고용가능	* 임금(실수령액) 외에 보험료, 주 택, 물가 등 보 조금 회사 부담 * 연간 20일 휴가
베 트 남	* 교육수준 양호 * 단순인력 풍부 * 숙련인력 부족	* 미숙련공: 30~50 * 숙련공: 120 * 관리자: 250	* 노동기관 직접 고용가능	* 사회보험료 15% * 연간 1주 휴가
인도네시아	* 교육수준 낮음 * 단순인력 부족	* 미숙련공: 60~80 * 숙련공: 100~160	* 노조와 계약	* 사회보험료 없음 * 과업금지 * 연간 2주 휴가

표 7.

식품관련 상품의 남북교역

반입(1994년 1월부터 9월)

품 목	수 량 (톤)	금 액(천불)	전년동기 대비(%)
<u>농·임산물</u>		8,796 (11,027)	7.6
호 도	2,412	5,395	
* 한 약 재	441	647	
버섯류	32	182	
들 깨	119	114	
도라지	1	2	
로얄제리	14	1,104	
고사리	167	502	
* 낙화생	528	452	
도토리	228	109	
볏짚	648	109	
꽃감	53	93	
염장두릅	66	46	
고구마줄기	41	38	
염장무우	6	2	
염장깻잎	4	1	
<u>수산물</u>		2,397 (2,680)	2.1
북어	564	680	
냉동꽃게	67	207	
염장바지락	37	70	
* 냉동명태	2,015	615	
* 냉동조기	150	805	
냉동우렁이	11	20	

반출(1994년 1월부터 8월)

품 목	수 량 (톤)	금 액(천불)	전년동기 대비(%)
<u>수산물</u>		97	1.0
* 냉동오징어	100	97	
설탕	1,000	344	

표 8.

자유경제부역지대내 투자우대조치

비교항목	비 자유 경제 무역지대	자유 경제 무역지대
투자 유형	합작, 합영	합작, 합영, 외국인기업
세율	기업소득세 : 25%, 기타소득 : 20% 거래세 : 규정세율	기업소득세 : 14%, 기타소득 : 10% 거래세 : 규정세율의 50%
조세 감면	감면없음	제조업 3년간 면제, 다음 2년간 50% 면제, 6천만원 이상 인트라투자 4년 간 면제, 다음 3년간 50% 면제, 수 출입물자에 대한 무관세
토지 임대	국토관리기관이 토지임대 협상을 통해 임대 장려부문에 한해 10년이내 범위에서 임대	지대당국이 토지임대 입찰, 경매를 통해서도 임대 가능 전지역에 걸쳐 10년이내 범위에서 임대
외국인 출입	사증 필요	초청장 소지자 무사증 출입
최저 임금	월 220원	월 160원

출처 : 주간경제(럭키금성경제연구소)